



학과내 세부과정 배정에 관한 규칙

규정번호	3-3-9
제정일자	2000.07.01
개정일자	2011.05.13
개정번호	Ver.2
총페이지	1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학과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의 세부과정 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세부과정 신청 및 배정 시기) ① 세부과정 신청 및 배정 시기는 학부(과)별로 정한다.

② 세부과정 신청과 배정에 관한 사항은 학기 종료 15일 전에 공고해야 하고, 배정 확정은 학기 개시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.

제3조(세부과정 배정 기준) 세부과정 배정에 대한 기준은 각 학부(과)별로 정하고, 제2조의 공고일 10일 이전에 각 학과에서 작성하여 총장의 허락을 득하여 확정한다.

제4조(복학생의 세부과정 배정) 세부과정 배정 이전에 휴학한 후 복학한 학생은 복학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정해야 한다.

제5조(세부과정 배정 단위) 세부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최소 40명 이상 단위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규칙의 개정) 이 규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